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7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환자관리팀〉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art 1.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1.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	<p>② (투여대상 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의약품 신청 당시, 다음 2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만 60세 이상 기저 질환[▲만성 폐질환, ▲고혈압,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 질환, ▲당뇨, ▲비만(BMI ≥ 30 kg/m²), ▲면역 억제 상태 ▲만성 신장애(경증/중등증), ▲만성 간장애, ▲활동성 암, ▲겸상적혈구 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div> <p>(신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투여대상 2'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증상발생/산소치료 기준 부합시 베클루리주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div>	<p>② (투여대상 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의약품 신청 당시, 다음 2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만 60세 이상 연령 만 12세 이상의 다음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고혈압,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 질환, ▲당뇨, ▲비만(BMI ≥ 30 kg/m²), ▲면역 억제 상태 ▲만성 신장애(경증/중등증), ▲만성 간장애, ▲활동성 암, ▲겸상적혈구 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div> <p>☞ 먹는 치료제 투약기관으로 베클루리주 투여 필요시 중증환자 치료병상, 감전병원, 병상대기·코호트 발생한 병원, 요양병원·시설, 생활치료센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제외) 외래진료센터에서 투약 가능</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인 인정 연장 시행 반영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투여대상 기준 부합 시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가능 조치 반영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10%;">전문기용 신속항원 검사</th> <th style="width: 10%;">PCR</th> </tr> </thead> <tbody> <tr> <td>투여대상 1</td> <td> ① CXR 또는 CT 상폐렴 소견 ② Room air SpO2 ≤ 94% ③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투여대상 2</td> <td>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산소치 료가 필요 하지 않은 환자)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1. 연령 만 60세 이상 2. 기저질환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전문기용 신속항원 검사	PCR	투여대상 1	① CXR 또는 CT 상폐렴 소견 ② Room air SpO2 ≤ 94% ③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	○	투여대상 2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산소치 료가 필요 하지 않은 환자)	○	○	1. 연령 만 60세 이상 2. 기저질환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	○	<p>(삭제)</p>	
구분	기준	전문기용 신속항원 검사	PCR															
투여대상 1	① CXR 또는 CT 상폐렴 소견 ② Room air SpO2 ≤ 94% ③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	○															
투여대상 2	경증·중등증 (▲증상발생 7일 이내, ▲산소치 료가 필요 하지 않은 환자)	○	○															
	1. 연령 만 60세 이상 2. 기저질환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	○															
2	<p>2 처방 시 유의사항</p> <p>(1) 베클루리주 투여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 정보 제공 (2) 베클루리주 정보 제공 설명서<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1-5>를 숙지하고, 동 내용에 따라 처방 및 투여 (3) 베클루리주 투여 환자 전원 시 타병원으로 잔여용량 인계하지 않음</p> <p>* 단 타병원에 베클루리주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잔여용량 인계 ※ 잔여용량을 인계한 경우 사후보고 시 두 병원 모두 각각 사용량 보고 ☞ 「Part 2.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치료제 투약보고 절차」 참고</p>	<p>2 처방 시 유의사항</p> <p>(1) 베클루리주 투여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 정보 제공 (2) 베클루리주 정보 제공 설명서<Part 3. 서식 및 참고자료 1-5>를 숙지하고, 동 내용에 따라 처방 및 투여 (3) 베클루리주 신장에 간기능 수치 증가 환자는 투여가 제한 또는 금지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 및 투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투여 제한 또는 금지 환자 선별을 위해 문진 시 참고</p> <p style="margin: 0;">① (신장에 환자) 이 약은 eGFR 30ml/min 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음 ② (간기능 수치 증가) 투여 전 ALT값이 정상상한치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지 않음 *상세사항은 (참고 1-5) 베클루리주 투여에 따른 정보 제공 설명서(p53)참조</p> </div> <p>(4) 베클루리주를 30분에서 120분에 걸쳐 1일 1회 점적 정맥 투여(IV infusion)한다. 이 약은 근육주사(IM)하지 않는다. (5) 베클루리주 투여 환자 전원 시 타병원으로 잔여용량 인계하지 않음</p>	<p>- 의료기관 문의내용 반영</p>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 단 타병원에 베클루리주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잔여용량 인계</p> <p>※ 잔여용량을 인계한 경우 사후보고 시 두 병원 모두 각각 사용량 보고</p> <p>☞ 「Part 2.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치료제 투약보고 절차」 참고</p>	
5	<p>(2) 공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입원(입소)한 기관 (중증전담, 감염병 전담병원, 생치협력병원, 생활치료센터, 요양 병원·시설·일반병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p> <p>* 요양병원·시설·일반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병상배정 지연 등 사유)으로 베클루리주 공급이 필요한 기관을 의미함</p>	<p>(2) 공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입원(입소)한 기관 (중증전담, 감염병 전담병원, 생치협력병원, 생활치료센터, 요양 병원·시설·일반병원*,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p> <p>* 요양병원·시설·일반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병상배정 지연 등 사유)으로 베클루리주 공급이 필요한 기관을 의미함</p> <p>**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치과·한방병원 제외)</p>	-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센터 추가
[Part 1.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II.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6	<p>(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준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p>※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2-6> 참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div>	<p>(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준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p>※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2-6> 참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div>	<p>-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 인정 연장 시행 반영</p> <p>-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투여대상 기준 부합 시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가능 조치 반영</p>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투여대상 2’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증상발생/산소치료 기준 부합시 베클루리주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p>※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치료제의 투약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215 938 936 1273"> <thead> <tr> <th>공통사항</th> <th>기준 1</th> <th>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th> <th>PCR</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td> <td>1. 연령 만 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td> <td>3. 연령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3. 연령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p>※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p>※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치료제의 투약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먹는 치료제 투여는 파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 의원급 의료기관은 먹는치료제 투약(파스로비드 제한자에 대한 라게브리오 복용) 곤란으로 베클루리주 투여 필요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제외)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p> <p>(삭제)</p>	
공통사항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3. 연령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 align="center"><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통사항</th> <th>12-39세</th> <th>40-59세</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td> <td></td> <td>기저질환자</td> <td>기저질환자</td> </tr> <tr> <td>면역저하자</td> <td>면역저하자</td> <td>면역저하자</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12-39세	40-59세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p align="center"><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통사항</th> <th>12-59세</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td> <td></td> <td>60세 이상</td> </tr> <tr> <td>기저질환자</td> <td>기저질환자</td> </tr> <tr> <td>면역저하자</td> <td>면역저하자</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12-59세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공통사항	12-39세	40-59세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공통사항	12-59세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8, 24, 25	<p>2 확진자 분류 및 처방 기관</p> <p align="center"><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4.4~) ></p> <table border="1"> <thead> <tr> <th>확진자 분류</th> <th>처방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치료</td> <td>(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td> </tr> <tr> <td>생활치료센터</td> <td>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td> </tr> <tr> <td>재활의료기관</td> <td>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요양병원</td> <td>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td>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td> <td>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td> </tr> <tr>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td> <td>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처방 가능</td> </tr> <tr> <td>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td> <td>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td> </tr> </tbody> </table> <p>*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 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공급 거점병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요양·정신병원), 원외(물량 담당약국으로 운송 후 조제·전달, 요양시설) 처방(4.6)</p> <p>○ (재택치료 면역저하자)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4월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처방 가능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p>2 확진자 분류 및 처방 기관</p> <p align="center"><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4.20~) ></p> <table border="1"> <thead> <tr> <th>확진자 분류</th> <th>처방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재택치료</td> <td>(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td> </tr> <tr> <td>생활치료센터</td> <td>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td> </tr> <tr> <td>재활의료기관</td> <td>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td> </tr> <tr> <td>요양병원</td> <td>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td> <td>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td> </tr> <tr> <td>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td> <td>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td> </tr> <tr>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td> <td>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처방 확대(4.20)</td> </tr> </tbody> </table> <p>*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공급거점병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요양·정신병원), 원외(물량 담당약국으로 운송 후 조제·전달, 요양시설) 처방</p> <p>○ (재택치료 면역저하자)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p>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처방 확대(4.20)	-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처방 확대 등에 따른 수정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처방 가능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처방 확대(4.20)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 (대면진료 강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과)에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처방 가능	
9	3 처방 시 유의사항 (신설)	3 처방 시 유의사항 ※ 제품의 효능/효과, 용량/용법, 사용시 주의사항 및 기타 의학정보에 대한 문의는 제약사(화이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정보실 ☎ 02-317-2148, 09:00~17:00)	- 처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제약사 연락처 추가
16	<p style="text-align: center;">▶ 먹는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p> <p>□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담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p>□ (수급관리) 현 제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결정일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제브리오는 3.29일부터 신청 가능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및 비교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제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제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7일 = 7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1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결별청(유한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p> <p>□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관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제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제브리오는 3.29일부터 신청 가능 <p>□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제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교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제배분 시, 제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비공주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p>□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 먹는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p> <p>□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담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p>□ (수급관리) 현 제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2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결정일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및 비교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제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제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14일 = 14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결별청(유한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p> <p>□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관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제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p> <p>□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제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교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제배분 시, 제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먹는 치료제 공급받은 기관의 운영중단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사에는 지자체·시군구 관할 지역 의료기관 약국 등에 선배 조치하고, 시스템에 입고조치 * 전배받은 물량은 사용량이 아닌 입고량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용자 입력시 전체 유효함에 유의 발생 함 <p>□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 물량 신청 변경(1주→2주필요물량) - 공급기관 운영중단 시 전배 등에 대한 안내 추가
19, 34	(3) (요양병원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① (원외처방)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 진료·처방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 ② (원	(3) (요양병원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따라 ① (원외처방)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 진료·처방후 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고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 ② (원	- 물량조정신청서 삭제에 따른 수정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내처방)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지자체(시군구, 시도)에 공급 요청하고, 보건소 또는 공급거점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수령 후 요양병원에서 진료·처방·자체 조제 실시</p> <p>* 원내처방 시, 15p 물량 조정 시 배송방법을 준용하여 요양병원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배송하는 것이 원칙</p>	<p>내처방)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지자체(시군구, 시도)에 공급 요청하고, 보건소 또는 공급거점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수령 후 요양병원에서 진료·처방·자체 조제 실시</p> <p>* 원내처방 시, 요양병원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배송하는 것이 원칙</p>	
20, 35	<p>-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 담당약국 재고 현황 고려하여 필요시, 요양시설에서 지자체(시군구, 시도)에 공급 요청하고, 보건소 또는 공급거점병원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 후 담당약국 통해 조제·전달</p> <p>* 19p 물량 조정 시 배송방법을 준용하여 요양시설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는 것이 원칙</p>	<p>-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 담당약국 재고 현황 고려하여 필요시, 요양시설에서 지자체(시군구, 시도)에 공급 요청하고, 보건소 또는 공급거점병원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 후 담당약국 통해 조제·전달</p> <p>* 요양시설에서 공급거점병원의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는 것이 원칙</p>	- 물량조정신청서 삭제에 따른 수정
[Part 1.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III.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22	<p>(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p>	<p>(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p>	<p>-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 인정 연장 시행 반영</p> <p>-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투여대상 기준 부합 시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가능 조치 반영</p>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기준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만 60세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연령 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p>※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2-6> 참고</p> <p style="text-align: center;">▼</p> <p>(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p>※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기준2 부합시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 진단 방법에 따른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215 1046 936 1417"> <thead> <tr> <th>공통사항</th> <th>기준 1</th> <th>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th> <th>PCR</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td> <td>1. 연령 만 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3. 연령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3. 연령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p>(기준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만 60세 이상 연령 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p>※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2-6> 참고</p> <p style="text-align: center;">▼</p> <p>(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p>※ ('22. 3. 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p> <p>*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p> <p>(삭제)</p>	
공통사항	기준 1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P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	○														
	2. 연령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														
	3. 연령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치료제의 투약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215 564 934 815"> <thead> <tr> <th>공통사항</th> <th>18-39세</th> <th>40-59세</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td> <td></td> <td></td> <td>60세 이상</td> </tr> <tr> <td>•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td> <td></td> <td>기저질환자</td> <td>기저질환자</td> </tr> <tr> <td>•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td> <td>면역저하자</td> <td>면역저하자</td> <td>면역저하자</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18-39세	40-59세	60세 이상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60세 이상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p>※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치료제의 투약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의원급 의료기관은 먹는치료제 투약(팍스로비드 제한자에 대한 라게브리오 복용) 곤란으로 베클루리주 투여 필요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제외)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965 564 1664 815"> <thead> <tr> <th>공통사항</th> <th>18-59세</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td> <td></td> <td>60세 이상</td> </tr> <tr> <td>•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td> <td>기저질환자</td> <td>기저질환자</td> </tr> <tr> <td>•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td> <td>면역저하자</td> <td>면역저하자</td> </tr> </tbody> </table>	공통사항	18-59세	60세 이상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60세 이상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공통사항	18-39세	40-59세	60세 이상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60세 이상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공통사항	18-59세	60세 이상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60세 이상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25	<p>3 처방 시 유의사항</p> <p>(신설)</p>	<p>3 처방 시 유의사항</p>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제품의 효능/효과, 용량/용법, 사용시 주의사항 및 기타 의학적정보에 대한 문의는 제약사(MSD社)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31-2000, 09:00~18:00)</p>	<p>- 처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제약사 연락처 추가</p>																												

쪽	현행(6-1판)	7판 개정(안)	개정사유
30	<p style="text-align: center;">▶ 먹는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p> <p>□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학과,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p>□ (수급관리)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질병청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렉제브리온은 3.29일부터 신청 가능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및 비교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7일 = 7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1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질병청(유관장청)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p> <p>□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렉제브리온은 3.29일부터 신청 가능 <p>□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교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백문우라와)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p>□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 먹는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p> <p>□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학과,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p>□ (수급관리)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2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질병청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및 비교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14일 = 14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1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질병청(유관장청)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p> <p>□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p> <p>□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교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먹는 치료제 공급방식은 기관의 운영중단(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관할 지역 의료기관, 약국 등에 안내 조치하고, 시스템에 입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배분은 물량분 사용량이 아닌 입고량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용량 입력시 전체 유효함에 오류 발생, 할 <p>□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 신청 변경(1주→2주필요물량) - 공급기관 운영중단 시 전배 등에 대한 안내 추가
[Part 2.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투약보고 및 재고관리] 1. 치료제 투약 보고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량은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u>1주일간 필요 물량에 대해 수요신청</u> → 비교란에 반드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공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량은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u>2주일간 필요 물량에 대해 수요신청</u> → 비교란에 반드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공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제 물량 신청 변경